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 - 19
------	---------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신설(안 제6장 제18조)

- 심의사항 : 구 조직운영정책 및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위 원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10명 이내
- 위 원 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 타 :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 수당 지급 근거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직관리 위원회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2. 7. ~ 2. 14. (제출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제외법령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조직관리위원회</u></p> <p><u>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2.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u>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관계공무원</u> <u>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u></p>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참석위원 수당 지급 등) 경미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
연 락 처	02-3153-8216